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7
----------	-----

제출년월일 : 2004.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 이유

주차장 이용시민들의 주차요금 징수의 시간단위 세분화 요구에 따른 주차요금체계 조정의 필요성과 교통정책 시행상 꼭 필요한 할인제만 존속하고 실효성 없는 할인제도를 폐지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실시 등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현행주차요금체계 개정

- 현 행
 - 최초 30분 기본요금에 초과 10분 단위 요금징수
 - 1-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배 부과
- 개 선
 - 최초 30분에 대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체계 조정
 - 1-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제도 폐지
 - 주차장 회전을 제고를 위하여 운영자가 주차장별로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차요금 감면제도 조정

- 현 행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최초 1시간(지하철 환승주차장 제외) 주차요금 면제 및 1시간 초과시 50% 할인
 -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10% 할인, 카풀차량(5급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개 선
 -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차량에 대하여 80% 할인요금징수로 개정 (노상주차장에서 1시간 면제 제도는 폐지)
 -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10% 할인, 카풀차량(5급지)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제도 폐지
 -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이행하고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주차요금 20% 할인 단 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신설)

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방법 강화

○ 현 행

-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 개 선

- 주차요금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 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바퀴 채움제)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 차량 : 3회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차량,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
- 운행제한장치 해제시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 비용(3만원) 납부제도 마련

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방법 개선

○ 현 행

-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 선

- 국가출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으로 개정·보완

3. 관계법령

- 주차장법
-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 예산수반사항 : 비예산사업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기를 부착하지”를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기기를 사용하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9호를 동조동항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①공영주차장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 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 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 비용 미징수
-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4조제1항중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

제4조 다음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영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량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④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에 대한 적용례)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전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획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사직로·울곡로·왕산로·다산로·청계천로·새문안길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단, 신문로1가 및 2가의 경우 새문안길과 직접 접하지 않는 지역도 1급지로 한다.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사.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삭제)

6.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1~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 목적 주차시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승용차 자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1급지 소재 주차장은 제외)
13. 주차요금의 할인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20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p> <p>②(생략)</p> <p>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9.(생략)</p> <p>제3조(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p> <p>②(현행과 같음)</p> <p>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기를 사용하지 ----- ----- ----- -----</p> <p>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우</p> <p>3.~10.(현행과 같음)</p> <p>제3조(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①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법 제8조의 제2항 및 법 제13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중로구형장(이하 "구형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u>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생략)</p> <p>2.<u>구형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생략)</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p> <p>2.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 -- 구형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 ----- -----</p> <p>1.(현행과 같음)</p> <p>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p> <p>3.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 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p> <p>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p> <p>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의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p> <p>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수탁관리자로 보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생략)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p> <p>②~③(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현행과 같음)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p> <p>②~③(현행과 같음)</p> <p>④주차장별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관련)											
구분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						구분	노상주차장				노면주차장					
	2시간까지		초과		일정기간		일정기간					1회주차		일정기간							
	1구회 최초 30분	1구회 10분	1구회 10분	1일주차 권(야간 제한함)	주간	야간	1구회 최초 30분	1구회 10분	주간	야간		1회주차 시 10분 초과 제한함	주간	야간	1회주차 시 10분 초과 제한함	주간	야간				
1 급지	1,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0,000	100,000	1	1,000	5,000	-	-	800	20,000	100,000			
2 급지	1,500	500	1,000	4,000	-	-	1,800	500	18,000	60,000	2	500	4,000	-	-	500	18,000	60,000			
3 급지	1,000	300	200	3,000	-	-	1,000	300	10,000	40,000	3	200	3,000	-	-	300	10,000	40,000			
4 급지	500	300	300	2,000	30,000	-	500	300	문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4	300	3,000	30,000	-	300	문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 급지	700	100	100	1,000	30,000	30,000	300	100			5	100	1,000	30,000	30,000	100	3,000	20,000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차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율은 4만원으로 한다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제7조1항 및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생 략)
3. 가-바(생 략)
사.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생 략)
5.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가. 10부제 운행차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는 운행하지 않는 것)
나. 출근시간대 5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3인이상 탑승한 자동차)
다. 기타 시장이 정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차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율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

비 고
1. — 주차요금표는 _____
_____ 공영주차장
2. (현행과 같음)
3. 가-바(현행과 같음)
사. _____
_____ 30%의 _____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현행	개정안
<p>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나.(생략)</p> <p>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의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6.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의 주차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p> <p>가.~나.(현행과 같음)</p> <p>8. ----- ----- 1-5급지 ----- ----- ----- -----</p>
<p><신설></p>	<p>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구역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신설></p>	<p>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p>
<p><신설></p>	<p>11.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신설></p>	<p>12. 승용차 자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인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1급지 소재 주차장은제외)</p>

현행	개정안
<p>8.(생략) 9.(생략)</p>	<p>13.(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p>
<p><신설></p>	<p>15. 20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p>